알록달록한 식품의 색

식용색소가 궁금하지않으세요?





식품에 알록달록 색을 내는 정체는 무엇인가요?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첩가물입니다.

> 황색4호, 황색5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녹색3호가 대표적입니다.



식품에 허용하는 식용색소는 몇 종류나 있나요?

현재까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총 72종이며, 색깔별로 대표적인 식용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색소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 ⊙코치닐색소
- ⊙락색소
- ⊙홍국적색소
- ⊙식용색소적색2호
- ⊙식용색소적색102호 등



- ⊙치자청색소
- ⊙스피룰리나색소
- ⊙치자청색소
- ⊙스피룰리나색소
- ⊙청색1호
- ⊙청색2호 등



- ⊙치자황색소
- ⊙홍화황색소
- ⊙마리골드
- ⊙식용색소황색4호
- ⊙식용색소황색5호 등



⊙오징어먹물색소 등

천연색소만 사용할 수 없나요?

- 천연색소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색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천연색소는 가격이 비쌉니다.

천연색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변색 될 수 있습니다.



식용색소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식품의 색이 퇴색되거나 변색되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량만 첨가해도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부여하는 황색4호 등의 색소가 있어 다양한 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VS



선명한 색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탕



변색되어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탕

식용색소. 과연 먹어도 안전한가요?

1일 선칙 허용량(ADI)을 설정하는 안심 3단계



돌물에게

<u>안전한 식품첨가물의</u> 양 = 블록 100개

사란에게

안전한 식품첨가물의 양 = 동물기준의 1/100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양

= 인체에 안전한 양보다 훨씬 적게 사용

식용색소는 1일 섭취 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일 섭취 허용량(ADI)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계속 먹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식용색소의 1일 섭취 허용량(ADI)은?

식용색소들의 ADI는 동물실험을 통해 결정되며,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용색소의 ADI는 다음과 같습니다.

25 mg/kg bw/day

조색2호: 0.15 mg/kg bw/day

조색3호: 0.1 mg/kg bw/day

적색40호: 7 mg/kg bw/day

조색102호: 0.7 mg/kg bw/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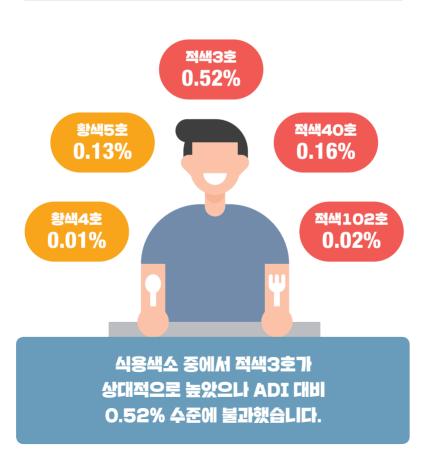
설색1호: 6 mg/kg bw/day

청색2호 : 5 mg/kg bw/day

황색4호 : 10 mg/kg bw/day

황색5호 : 4 mg/kg bw/day

우리는 식용색소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식용색소가 식품에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은 제품의 표면에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용도를 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식용색소는 '000(착색료)'로 표기됩니다.



1한 : 현품별도표기는 (위는법: 너 월 일순) 원로명 '포도당시면, 설망 토피플라테와, 고기, 정해수, 포도당 구면산, 정산, 정산나를 통, 합성학합되시과, 오현지 라즈페리, 말기, 레몬, 당근축출물, 블러커린트농축물, 카나우 바왁스, 물건일, <u>현건학생료</u>(원황석, 피프리카추출색상) [퍼지고기함유] 보편반법 '작사광선을 비하고 서늘한 '문제생물한 '국제생은보본 '대학생선을 기하고 서늘한 '문제생물한 '국인체 또는 수인가

지질 : 폴리프로필렌

식용색소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합성착<u>색료</u>)

식용색소, 이제 제대로 알고 드세요!



식품첨가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아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자,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보호조치 요구 방법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44-200-7949

발행일 2018년 | 발행인 이선희

편집위원장 홍진환 | 편집위원 김미경, 이근영, 임호수, 윤상순, 김정원(서울교대) 도움주신분 김선아, 김보라(방송통신대), 강희진(명지대), 이은주, 한효정, 성혜선, 박은영(서울교대)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 (Tel: 043-719-4352, Fax: 043-719-4350)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이 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 중 착색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한 교육홍보 자료입니다.

